

기획조사 06-061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2006. 11

정보서비스본부
해외조사팀

요 약

베트남이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실무협의회에서 WTO 가입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제 11월 7일 WTO 총회에서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데,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 우리의 대 베트남 무역투자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의 대 베트남 500개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39.9%에 달하는 190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오히려 인상되며, 94개 품목은 관세의 변동이 없어, 전체적으로 58.1%에 이르는 품목의 수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WTO 가입 이후에도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AFTA관세와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관세가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은 WTO 가입으로 진입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비스분야의 경우 가입 직후부터 외국인 투자가 49% 지분제한으로 허용되며 2~3년 뒤에는 100% 단독투자가 허용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경우에도 당장에는 시장개방이 되지 않으나 3~4년이 경과한 후에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WTO 가입은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이외에도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체제 안으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WTO 가입으로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미국·EU 등 서방 국가들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이 예상된다. 최근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만한 투자대상국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WTO 가입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베트남의 WTO 가입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베트남 FTA 체결, 서비스 분야 진출 강화, 베트남 산업발전 계획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베트남의 WTO 가입 현황 / 1

1.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 현황과 우리의 관심사항 / 1
2. WTO 가입 후 공산품 시장환경 변화 / 2
3. 주요 쟁점 사항인 서비스 분야 개방 및 보조금 철폐 현황 / 4

II. 베트남 WTO 가입 및 수입관세 조정이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5

1.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수입관세 변화 전망 / 5
2.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 / 7
3. AFTA 우대 관세와 WTO 가입 후 수입관세 비교 / 9
4. 우리의 대 베트남 공산품 수출환경 전망 / 10

III.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진출 여건 변화 / 11

1.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 11
2. 주요 서비스 분야별 개방 내용 / 12

IV.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및 경영 환경 변화 / 22

1.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및 우리기업 진출 현황 / 22
2.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 25

V. 베트남 WTO 가입 이후 시장진출 확대방안 / 25

I. 베트남의 WTO 가입 현황

1.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 현황과 우리의 관심사항

- 베트남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베트남은 그 동안 26개 주요 교역대상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였고 10월 25일 스위스 GENEVA에서 개최된 WTO 실무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마무리 되어 오는 11월 7일 WTO 총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베트남의 WTO 150번째 회원국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WTO 가입은 세계 경제체제에서 베트남이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며 글로벌 체제 안으로 진입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사항은 베트남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되는지, 수입관세는 얼마나 낮추어지는지,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과 추진하는 AFTA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 수혜가 가능한지가 더 관심사라 할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크게 WTO 가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시장접근의 용이성 여부와 우리 투자진출기업의 경영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 여부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투자기업들의 진출환경과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관심사항임

2. WTO 가입 후 공산품 시장환경 변화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총 10,600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향후 5년간에 걸쳐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 WTO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예상>

구 분	현행	WTO 가입후(5년내)
평균 수입관세	17.4%	14.0%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31.6%	21%
공산품 평균수입관세	36.5%	12.6%

자료원 :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 특히 섬유류 및 의류는 63.2%, 해산물은 38.4%, 목재 및 종이는 32.8%, 전기기기 및 기계류는 23.6%, 가죽 및 고무는 21.5%의 수입관세 인하를 각각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노동 표준, 섬유 및 봉제분야, 맥주 및 알코올 분야 소비세 부과 분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WTO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참고로 베트남이 WTO 가입 조건으로 약속한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 품목 일부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 관심품목의 관세율 인하 전망>

품목명	WTO 가입직후 수입관세율(%)	최종 인하세율(%)	최종인하 년도
섬유 화이버	12	12	가입즉시
섬유봉제	20	20	가입즉시
카페트	100	100	가입즉시
신발	40	30	2012
타일	40	35	2012
기와	50	45	2012
식기,접시	40	30	2012

철강	20	10	2014
스텐레스 강	10	10	가입즉시
오토바이체인	50	35	2012
오토바이 (250cc이하)	95	75	2012
오토바이 (250-800cc)	100	75	2012
오토바이 (800cc이상)	100	40	2015
냉장고	40	25	2010
식기세척기	30	20	2010
섬유기계	0	0	가입즉시
세탁기	38	25	2011
컴퓨터주변기기	10	0	2012
진공청소기	45	25	2012
전자레인지	40	25	2012
헤어드라이어	40	25	2012
전기밥솥	40	20	2012
전화기	20	0	2014
버스	100	70	2014
화물차량(5톤이하)	100	70	2014
화물차량 (5톤이상, 20톤이하)	60	50	2012
승용차 (2,500CC이하)	100	70	2014
승용차 (2,500CC이상)	90	52	2019
중고승용차 (2,500CC 이하)	200% 또는 150% + 10,000\$ 중 선택	좌동	가입즉시
중고승용차 (2,500CC 이상)	200% 또는 150% +15,000\$중 선택	좌동	가입즉시

3. 주요 쟁점 사항인 서비스 분야 개방 및 보조금 철폐 현황

-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수입관세 인하와 함께 서비스 분야 개방, 각종 보조금 철폐 등 많은 분야에 있어 현재와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행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약 110개 분야를 개방해야 하는데 베트남이 개발도상국 지위임을 감안하여 그 유예기간을 7년간 인정받아 향후 7년간 110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될 예정이며 특히 우편·통신 분야의 개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임
- 이와 함께 농산물과 공산품에 적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철폐해야 하는데 우선 농산물의 경우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생산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재원을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할 수 있어 베트남의 연간 농산물 생산 수익금 규모 11억불의 10%인 약 1.1억불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공산품 보조금 철폐의 경우 베트남이 WTO 가입 이전 제공 하던 수출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제도는 WTO 가입 5년 이내에 철폐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섬유·의류산업에 베트남 정부가 연간 약 40억불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Decision 55에 근거) 미국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정보통신분야 개방, 금융분야 개방, 육류 및 관련산업 시장 개방, 와인 맥주에 대한 소비세 징수 문제 등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대형 오토바이 수입은 수입허가 및 고 관세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의 WTO 가입 주요 현안 사항>

구 분	개방내용	비고(유예기간)
서비스 분야 개방	155개 분야중 110개 분야를 7년내 개방	7년간 유예
농산물 보조금 철폐	보조금 철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금으로 대체 가능(약 1.1억불)	연간농산물생산수익금(11억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공산품 보조금 철폐	- 보조금 철폐 - WTO 가입 전 수출보조금 및 지원책은 가입 후 5년 내 철폐	5년간 유예

II. 베트남 WTO 가입 및 수입관세 조정이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수입관세 변화 전망

- WTO 가입 즉시 베트남 정부는 총 10,60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협상안에 의거하여 조정할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는 WTO 가입 시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가 5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WTO 협상과정에서 베트남의 대외 무역 체계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베트남 정부 관리들로부터 느껴지고 있어 WTO 가입 시 막연히 수입 관세가 인하되고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 할 수 있음
- 하노이 무역관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품목 중 WTO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9%인 20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 수출실적 HS 6단위 기준 500개 품목 중 분석 불가능한 11개 품목 제외
- 반면, 39.9%를 차지하는 190개 품목은 WTO 가입으로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94개 품목(18.2%)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을 합할 경우 총 284개 품목 58.1%는 오히려 수출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베트남 WTO가입 후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수입관세 변화 전망>

수입관세 변동 현황	489개 수출 품목 수 기준		489개 품목 수출금액 기준	
	품목 수	비중(%)	수출액 (’05년, 억불)	’05년 수출액 비중(%)
수입관세 인상효과	190	39.9	14.4	42
수입관세 인하효과	205	41.9	10.7	31.2
수입관세 불변	94	18.2	3.8	11.1
총계	489	100	28.9	84.3

자료원 : 무역관 자체분석

- 한편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05년 수출액에서 42%를 차지한 품목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31.2%에 해당하는 품목만이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임

<베트남 WTO 가입 및 수입관세 변화 영향 분석>

구 분	내 용	품목 수	'05수출액 (억불)	'05수출액 중 비중 (%)
WTO 가입 후 수입관세 인상	WTO 가입 직후 및 이후에도 수입 관세가 현행 관세보다 높아지는 품목	159	10.4	30.3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 인상 후, 향후 현행 관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는 품목	11	0.5	1.5
	WTO가입직후 수입관세 인상 후 향후 현행 관세보다 낮아지는 품목	20	3.5	10.2
	소 계	190	14.4	42
WTO 가입후 수입관세 인하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 인하 품목	112	6.8	19.8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 불변, 향후 수입관세 인하 예정 품목	93	3.9	11.4
	소 계	205	10.7	31.2
WTO 가입후 수입관세 불변	WTO 가입직후 및 향후에도 수입관세 불변품목	94	3.8	11.1
총 계		489	28.9	84.3

주: '05년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34.3억불 기준

2.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변화로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음(489개 세부 품목은 첨부자료 참조)

<세부 수출 품목별 영향>

내용	주요 품목	품목수/ '05년 수출액
WTO 가입 직후 및 이후에도 수입관세가 현행 관세 보다 높아지는 품목	석유, 옥탄올, 황산 암모늄, 제초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우레탄, 부타디엔 고무(BR), 폴리에스테르 장·단 섬유, 합성 장섬유 기타 단사, 철 및 비합금 열간압 평판 압연제품(7208), 기타 형강, 스테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스테레스 봉, 오일 및 가스 배관용 기타 파이프, 철강제 플랜지,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박,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세탁기, 표백기, 염색기, 방적기, 자동식 및 기타 재봉기, 신발제조 및 수선용 기계, 피혁제품 제조기계, 무선송수신기기(TV)용 부품, 칼라TV용 음극선관,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량, 특장차량 등	159개/ 10.4억불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가 인상되나 최종 이행년도에 현행 관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는 품목	아소시아네이트, 폴리스틸렌 아크릴로니트릴, 카본 블랙, 기타 유리섬유 및 제품, 철, 비합금강의 냉간압 평판제품, 아연도금 철 및 비합금강, 에어컨용 컴프레서, 전선제조용 금속처리 기계(권선기 포함)	11개/ 0.5억불
WTO 가입직후 수입관세가 인상되나 최종 이행 년도에 현행 관세보다 낮아지는 품목	ABS 수지, 염화수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필름, 폴리아미드 필름, 폴리우레탄 필름,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 산화크롬 및 산화크롬 도금판, 전산용 기억장치(847170), 음성재생기기, 인터넷 수신기능을 갖춘 모바일 폰, 16인승 이하 버스, 특장차, 5톤 이하 화물자동차	20개/ 3.5억불

WTO 가입직후 수입 관세가 현행 관세이하 로 인하되는 품목	어류, 연체동물, 화장용 컴파운드, 플라스틱제의 장식제품(392690), 크라프트지와 판지, 골판지, 모직물, 면사, 면직물, 합성장섬유의 재봉사, 표백직물, 염색직물, 날염직물, 비텍스춰드 직물, 합성단섬유의 재봉사, 면혼방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직물, 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직물, 기계제의 레이스, 직조 레이블 및 뱃지, 폴리비닐 크로라이드 및 폴리우레탄 피복 방직용 섬유 직물, 직물제 의류 부속품 및 부분품, 신발류 원부자재(고무 및 플라스틱 아우터 소울 및 힐), 비금속모조장신구류, 알루미늄 식탁 및 부엌용품, 알루미늄제 창문, 창문형 및 벽형 에어컨, 외부도어 냉장고 및 냉동고, 정수기, 가정용 및 업소용 세탁기 부분품, 가정용 재봉기, 축전지, 칼라 TV, 자동차용 새시,	112개/ 6.8억불
WTO 가입 직후에는 수 입관세 불변하다 최종 이행 년도에 현행 관세 보다 인하되는 품목	비타민 의약품, 소매용 기타 의약품, 유기계면활성제, 스티렌의 중합체, 플라스틱 파이프 및 호스, 플라스틱 접착성 필름, 용접봉,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원심펌프, 지 또 는 판지제 레이블, 5톤이상 20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도체, 자동차용 기타 부속품(870899), 오토바이 부분품 및 부품, 섬유용 단추류, 슬라이드 파스너 및 부분품	93개/ 3.9억불
WTO 가입직후 및 향 후에도 수입관세 불변 품목	액화부탄, 탄소, 백신, 칼리 인쇄잉크, 라텍스, 금속 라미테니팅 피혁, 음극 형재(철강), 알루미늄웨이스트 스크랩, 알루미늄 피, 합금하지 않은 아연, 아연합금, 냉장고 및 냉동고, 타워크레인, 360도 회전 로더, 30센티 초과 셔틀형 직조기, 레이스 제조기계, 피혁가공기계, 사출성형기, 압출기, 사출기용 몰드, 음극선관의 부분품, 초음파 영상진단기, 일회용주사기, 기타 완구, 기타 낚시용구	94개/ 3.8억불

3. AFTA 우대 관세와 WTO 가입 후 수입관세 비교

-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489개 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가 아세안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AFTA 수입 관세율과 WTO 가입직후 수입 관세율, 가입 이전 수입 관세율 등 3개 평균 수입관세율을 산정, 비교해 본 결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수입관세율 2.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 아세안 회원국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 이전 적용 받는 MFN 평균 관세율이 16.6%이고 베트남의 WTO 가입 직후 적용 받는 평균 수입 관세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WTO 가입 후에도 수입 관세 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489개 품목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구 분	MFN수입관세	AFTA수입관세	WTO가입직후 수입관세	비 고
평균관세율	16.6 %	2.6 %	15 %	

자료원 : 하노이 무역관 자체 분석

- 또한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수입관세 변화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MFN 관세율과 AFTA 관세율, WTO 가입직후 관세율, WTO최종 이행년도 관세율 등 평균관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비록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수입관세율 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AFTA 관세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 비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경쟁이 불가능한 정도로 관세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주요품목별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내용	MFN평균 수입관세율	AFTA평균 수입관세율	WTO가입 직후수입 관세율	WTO최종 이행수입 관세율	비고
WTO 가입 직후 및 이후에도 수입관세가 현행 관세 보다 높아지는 품목	2.0 %	0.8%	10.7%	9.7%	159개 품목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가 인상되나 최종 이행 년도에 현행 관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는 품목	6.5%	1.8%	12.3%	6.5%	11개 품목
WTO 가입직후 수입관세가 인상되다 최종 이행 년도에 현행 관세보다 낮아지는 품목	35.5%	3.3%	44.8%	24.2%	20개 품목
WTO 가입직후 수입관세가 현행 관세이하로 인하 되는 품목	37.3%	4.7%	16.0%	20.4%	112개 품목
WTO 가입 직후에는 수입관세 불변하다 최종 이행 년도에 현행 관세 보다 인하되는 품목	23.9%	4.3%	23.9%	16.0%	93개 품목
WTO 가입직후 및 향후에도 현행 수입관세 와 동일한 품목	5.35%	1.2%	5.35%	5.35%	94개 품목

4. 우리의 대 베트남 공산품 수출환경 전망

- 이상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 공산품만을 기준할 때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은 다음과 같이 예측됨
 - 수출 품목 중 41.9%, 총 수출금액 중 31.2% 정도만이 베트남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환경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 반면, 베트남 수출 품목 중 58.1%가 수입관세가 인상되거나 불변하여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는 수입관세 인상 및 향후에도 인하계획이 없는 석유,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및 합성수지 계열 제품, 열간압 평판 압연판 등 철강제품, 신발제조 및 수선기계 등 약 159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WTO 가입 후에도 베트남이 ASEAN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AFTA관세와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관세는 큰 격차를 보여 우리나라로서는 AFTA 회원국에 비해 베트남 시장에서 공산품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

III.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진출 여건 변화

1.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건축, 컨설팅, 증권, 도소매업, 통신, 영화, 엔터테인먼트, 운송 등 각종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상황임
- WTO 서비스시장 개방은 인터넷 구매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모드1), 유학, 해외치료처럼 소비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2), 외국의 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외국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 모드4) 등으로 구분돼있음
- 이중에서 우리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드3이며 하노이 무역관은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서비스 영업활동에 관심이 큰 42개 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분석하였음(첨부 자료 참조)

-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은 전반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는 가입 직후부터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되 49%의 출자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가 2-3년이 경과한 이후에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며 민감한 품목은 WTO 가입 직후에는 시장개방을 하지 않다가 3-4년이 경과한 후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개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를 들면 법률서비스, 회계 및 세무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1년 후부터 100% 외국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우리의 생계형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소매업 및 유통업, 프랜차이즈 분야는 WTO 가입 1년 후부터 합작투자 형태로만 51%까지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하며 3년 이후부터 100% 단독투자를 허용한다.
- 할인매장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건부 투자 승인하는 것으로 개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여행업 및 광고서비스업은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100% 외국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건설 및 건축 토목 분야는 WTO 가입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이동통신사업은 WTO 가입 후에도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투자자 지분도 49%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험업은 WTO 가입 2년 후부터, 은행업은 5년 이후 완전한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상황임

2. 주요 서비스 분야별 개방 내용

- 하노이 무역관이 조사한 42개 서비스 분야 개방 현황은 첨부 표와 같으며 이 중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1년 동안은 베트남 진출 외국회사로 영업의 범위를 국한하거나 진출형태도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이상의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진출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로펌 및 회계전문 법인들도 동 조건을 충족시키며 진출해야 할 것임

<베트남의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법률서비스(베트남 법률 서비스 제외)	- 외국법무법인의 개설은 외국법무법인 지점, 외국 로펌, 외국법무법인과 베트남 법률 법인과의 합작 형태로 허용됨 - 자문변호사가 베트남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변호사에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시킬 경우 외국법무법인의 베트남 법무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가 허용됨
회계, 감사, 회계장부정리서비스	- 외국회사가 베트남 내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재무부가 발급한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분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직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세무서비스	- WTO 가입일로부터 1년간은 동 분야 영업 허가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승인될 것이며 세무 서비스 제공구성원 수는 베트남 시장의 발전상황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 재무부가 별도로 정함 - WTO 가입일로부터 1년간은 외국 세무서비스 제공회사의 영업범위는 외국인 투자 회사 및 외국 투자자본 프로젝트에만 국한됨
경영컨설팅서비스	- 합작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의 형태로만 외국인 투자가 허용됨 - WTO 가입 1년 후부터는 100% 외자 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② 통신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 가장 관심분야인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그 동안은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만 허용하던 것을 이제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조건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외국투자 지분이 49%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 확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휴대폰 이용자 수가 2006년 말까지 약 1천만이 예상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산업 성장속도가 빨라 경영권 확보 조건 취약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유력한 베트남 합작선 선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할 것임

<베트남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음성전화 서비스	- 국경 간 이동은 베트남 국제 음성 서비스 면허 소지기업과 상업적 협의 필요 - 베트남 내 서비스의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 후 2년 내에는 음성전화서비스 제공권리를 소유한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BCC)이 허용됨 - WTO 가입 2년 후부터는 동 서비스 권리 소유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 출자비율은 49% 이내로 제한됨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텔렉스 서비스, 전신 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 전용회선 서비스, 기타 서비스(모바일 전화, 모바일 데이터 전송,페이징, PCS, 트렁킹 등)	- WTO 가입 직후부터 동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 및 합작 회사설립은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49% 이내로 제한됨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 전자메일, 음성메	- WTO 가입 직후부터 동 서비스 영업 허가권이 있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 계약 및 합작 회사 설립

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복구, 전자자료 교환(EDI),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축적 및 전송, 축적 및 회수 포함),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자료 처리	은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 제한됨
--	---------------------------------------

③ 건설 및 건축·토목 서비스 분야

- 베트남이 비록 WTO에 가입해도 2년 동안은 100% 외국투자회사의 경우 베트남 내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만 영업이 제한되며 그 이후부터 시장 개방이 예상됨
- 참고로 부동산 개발 분야는 그 동안 사안별로 투자가 허용되던 것이 금번 WTO 가입을 통해 투자법(2006년 7월1일 시행), 부동산사업법(2007년 1월1일 시행), 주택법(2006년 7월1일 시행)을 통해 정식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함

<베트남 건설 및 건축·토목 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일반 빌딩 건설업, 토목 건설업, 설치 및 조립업, 빌딩 완공 및 마감업, 기타	- WTO 가입일로 부터 2년간은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회사 및 외국인 투자펀드 프로젝트에만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 한편 건축설계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개방 내용도 건설업과 매우 유사한 정도로 개방될 것임

<베트남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시장개방 현황>

건축설계서비스	-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은 100% 외국인투자회사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회사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만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엔지니어링 서비스,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투자회사 동 분야 영업 서비스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국한됨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	- WTO 가입 2년 후부터, 100% 외국인 투자 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WTO가입 직후 2년간 100% 외국인 투자 회사의 영업은 외국인 투자회사에게만 국한됨(제1 조항과 모순되는 바 아마도 가입 2년 후부터 2년 기간 동안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도소매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서비스 분야

- 동 분야 시장 개방은 WTO 가입 직후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회사만 설립이 허용되며 출자지분도 49%로 제한됨
- 그러나 WTO 가입 1년 후부터 외국인의 51% 지분이 허용되며 100% 단독투자 기업 설립은 베트남의 WTO 가입 3년 후부터 허용됨
- 우리기업들의 관심사인 할인매장(아울렛) 형태의 진출은 개별적으로 심사 후 결정되며, 완전한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도소매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시장 개방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커미션 에이전트업, 도매 서비스업, 소매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별도 법령 및 규정에 정함)	-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 가입 1년 후부터 외국인 자본 비율제한은 51%로 허용됨 - 가입 3년 후부터 100%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 단, 소매 서비스업에 있어 직매점(아울렛)의 설립 허가는 개별적으로 심사 후 결정될 것임

⑤ 호텔, 레스토랑, 여행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

- 베트남 정부는 3성 이상급 호텔 건립만 허용하며 여행업의 경우 WTO 가입 후 3년까지만 외국인의 시장접근이 제한되며 그 이후는 완전 철폐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진출을 허용하며 외국자본 투자 비율도 49% 이내로 제한됨

<베트남의 호텔·여행업·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호텔 및 레스토랑 - 숙박 서비스 및 요리 및 음료 조달 서비스 포함	- 호텔의 건설 또는 인수가 병행되는 투자의 경우에만 동 서비스 영업이 허가됨 - 호텔은 베트남 호텔 등급 기준으로 3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함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	-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이 5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WTO 가입 3년 후부터 외국인 자본참여 제한 비율은 철폐될 것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포함)	- WTO 가입 5년 이후부터 개방되며, 외국인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됨
기타서비스(전자게임 사업 포함)	-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나 동 서비스 공급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 자본 비율은 49%를 초과해서는 안됨

⑥ 의료 서비스 분야

- 베트남 정부는 100% 외국인 투자 병원설립을 허용하며 다만 병원의 경우 2천만불 이상 투자, 의원의 경우 200만불 이상, 전문 의원의 경우 1백만불의 투자규모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베트남의 의료분야 시장개방 현황>

병원 서비스, 의료 및 치과서비스	- 100% 외국인 투자 병원 설립,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 병원(Hospital)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 투자자본은 미화 2천만불, 의원(Clinic) 진료소의 경우 미화 200만불, 전문 의원일 경우 미화 1백만불임
-----------------------	---

⑦ 영화제작, 배급, 상영 서비스 분야

- 베트남 정부는 동 분야에 대해 외국자본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WTO 가입 3년이 지난 이후에야 51%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임
- 동 분야는 베트남 정부의 검열을 통과하는 등 심의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영화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영화 제작 (CPC 96112, 비디오 테이프 제외)	- 베트남에서 영화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 계약 및 합작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49%이내로 제한 됨 -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외국자본 출자제한 비율은 51%가 될 것임 - 모든 제작 필름은 베트남 관할 당국에 의한 내용 검열을 받아야 함
영화 배급 (CPC 96113, 비디오 테이프 제외)	- 베트남에서 영화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 계약 및 합작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이내로 제한 됨 -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외국자본 출자제한 비율은 51%가 될 것임 - 모든 제작 필름은 베트남 관할 당국에 의한 내용 검열을 받아야 함

영화 영사 서비스(CPC 96121)	- 베트남에서 영화영사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 및 합작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 WTO 가입 3년 후부터 외국 자본 출자제한 비율은 51%가 될 것임 - 모든 영사 필름은 베트남 관할 당국에 의한 내용 검열을 받아야 함 - 서비스 공급은 영화관 건설 투자와 병행되어야 함 - 베트남 문화회관, 영화 상영관, 공공 영화클럽 및 단체, 이동 영사팀은 외국 영화 영사 서비스 영업회사와 경영협력계약이나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금지됨
----------------------	--

⑧ 택배 서비스업 분야

- 동 분야는 WTO 가입직후 49%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만 허용되며 4년 경과 후에는 51%까지 개방이 확대되고 8년 이후부터 완전 개방이 기대됨

<베트남 택배 서비스업 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택배서비스(서신 배달료 12불 이하 및 중량 2,000그램 이하 서신 제외)	- WTO 가입 직후 외국인 자본 49%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가입 4년 이후부터 외국자본 비율이 51%까지 허용되며 가입 8년 이후부터 100%까지 허용됨

⑨ 광고 서비스업 분야

- 동 분야도 WTO 가입 3년 후부터 완전 개방이 예상되며 그 이전에는 투자지분 제한이 있음

<베트남 광고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광고 서비스(알코올 음료, 담배를 제외한 광고서비스)	- WTO 가입 직후부터 외국투자가는 베트남 내 광고 영업활동 권한 소지 기업과 합작 또는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 회사설립이 허가됨 - 외국인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 투자금액은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자본 출자 비율 제한은 베트남의 WTO 가입 1년 후부터는 51%까지, 3년후 부터는 100%까지 허용됨

⑩ 수리·보수 서비스업 분야

- 동 분야는 WTO 가입 3년 후부터 시장개방이 예상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 100% 외국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 우리기업이 관심이 많은 분야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베트남의 수리·보수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장비의 유지 및 수리 서비스(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운송장비 제외)	- 가입일 3년 이후부터, 외국인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5년 이후부터는 자본 제한이 철폐됨

⑪ 보험·은행·증권업 분야

- 보험업의 경우 WTO 가입 2년 후부터 실질적이나 시장개방이 예상되며 은행업의 경우 WTO 가입 5년 후까지는 베트남 일반고객의 예금 유치와 관련해서 제한이 존재함

<베트남 보험 · 은행 · 증권업 서비스 분야 개방현황>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 -생명보험(건강보험 제외) -비 생명보험 -재보험 -보험 보조업무 서비스(보험 대리점 서비스 제외)	- WTO 가입 직후부터 보험 서비스 공급을 허가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50% 이내임 - 가입 1년 후부터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 허용될 수도 있음 -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건설 및 설치에 관련 보험, 석유, 가스프로젝트 보험, 공공의 안전 및 환경 훼손 위험이 큰 건설 프로젝트 보험 분야 영업은 금지되며 WTO가입 2년 후부터, 상기 제한은 폐지될 수도 있음 -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는 베트남 재보험회사에 보험 계약 책임의 최소 20% 범위에서 재보험이 허용되며 WTO 가입 1년 후부터 동 제한은 폐지될 수 있음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 외국인 신용 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이 허용됨 · 외국 상업 은행 :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외국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 은행,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 단, WTO 가입 5년 후부터 100% 외국인 투자 은행의 현지 법인이 허용됨 · 외국 금융 회사 :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 외국 금융 리스 회사 : 대표 사무소,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리스 회사 - WTO 가입일로부터 4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하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가입 후 1년 : 납입자본금의 600% · 가입 후 2년 : 납입 자본금의 700% · 가입 후 3년 : 납입자본금의 900%, · 가입 후 4년 : 완전한 내국민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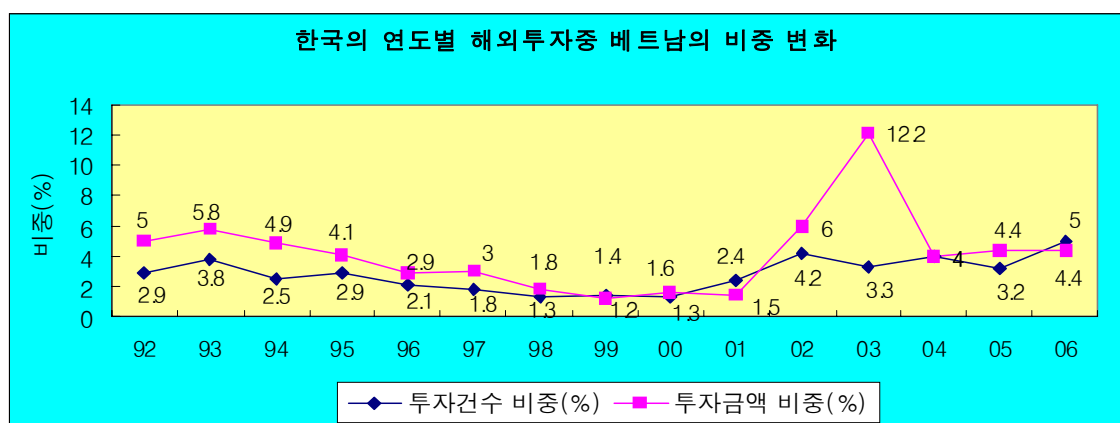
	- WTO 가입 후 6년 기간 동안 외국 은행은 신용 관계가 없는 베트남 자연인의 동(Dong)화 예금액을 다음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가입 후 1년 : 납입자본금의500% · 가입 후 2년 : 납입자본금의650% · 가입 후 3년 : 납입자본금의800% · 가입 후 4년 : 납입자본금의900% · 가입 후 5년 : 납입자본금의1000% · 가입 후 6년 : 완전한 내국민 대우 - 주식 매입 비율 제한 : 베트남 정부는 외국 신용 기관의 베트남 국영 은행 인수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의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 주식 보유 비율은 정관 자본금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외국은행 지점영업 : 외국 은행의 지점은 본사 이외 다른 업무 지점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고, 베트남 은행의 허가 없이 본사 이외의 곳에 현금 자동 인출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 하에만 현금 자동 인출기 네트워크에 접속이 허용됨
증권	- 비 은행권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개설만 허용됨.
모든 종목의 증권, 주식 인수 및 관련 서비스	- 비 은행권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개설만 허용됨. - WTO 가입 5년 후부터, 외국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설립은 허용됨

IV.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및 경영 환경 변화

1.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 및 우리기업 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및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서의 부상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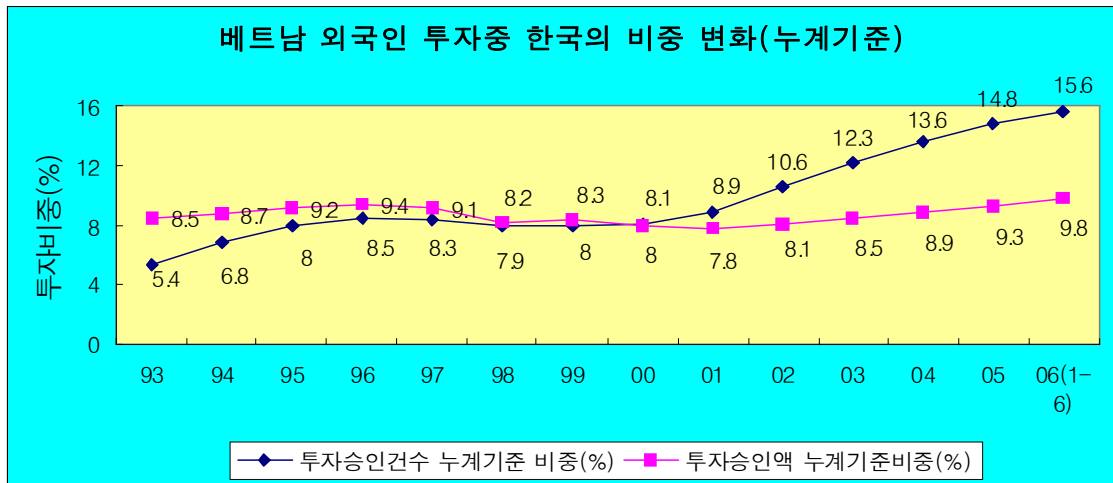
-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 및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이유를 살펴보면
 - 첫째, 베트남의 WTO 가입을 통해 내·외국인간 차별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전반적인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있음
 - 둘째, 투자법 및 기업법 등 각종 법령 및 규정이 국제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되어 진출 시 불확실성이 낮아진 반면 시장 환경 예측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셋째,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및 대체 투자지로 아시아 인근에서 베트남과 경쟁 가능한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대비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함
 - 넷째, 베트남 정부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연간 재원의 약 26%-27%를 FDI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다섯째, 베트남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내수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이 용이하기 때문임
- 지난 1993년 이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약 12.2%를 베트남이 차지한 바 있고 최근 3년간은 약 4%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원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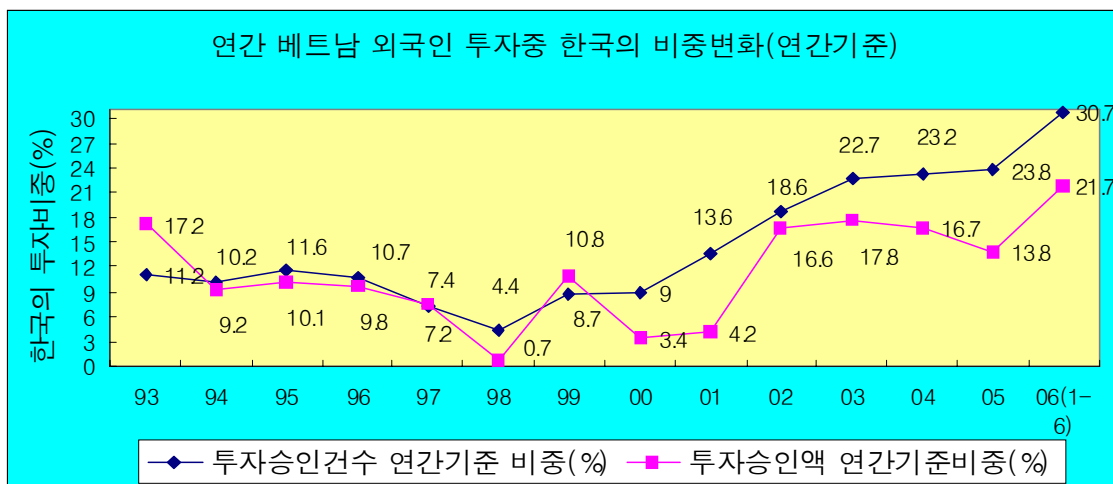
주: 2006년은 1-6월 기준

-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로 인한 우리기업의 투자증가로 베트남 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참고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누계기준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누계액면에서는 약 8%-9%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투자건수 면에서는 종래 10% 이하 비중에서 최근 3년간 약 13%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 수출입은행

- 특히 연도별 투자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승인 건수 면에서는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중 20% 이상(2006년 6개월간은 30.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승인 금액 기준으로는 16%-1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자료원 : 수출입은행

2.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됨
 - 첫째,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상품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AFTA 특혜관세를 누리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베트남 시장진출이 가속화 되어 베트남에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임
 - 둘째, 베트남의 WTO 가입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일본, 미국 등의 외국기업의 진출 또한 활발해져서 노동인력 구득난, 근로자 임금의 경쟁적 인상(영어구사 사무직 직원 임금은 이미 가파른 상승 중), 전력, 수도 가격 인상 및 외국인 주거가능 주택임차가격 인상 등 부대비용이 상승할 것임
 - 셋째, 외국 유명 브랜드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 가속화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그 동안 공산품 시장에서만 경쟁을 벌였으나 이제는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시장에서도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V. 베트남 WTO 가입 이후 시장진출 확대방안

☐ 한-아세안 FTA 체결을 통한 돌파구 마련

-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에도 공산품 수입관세율 분야에서는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공산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시행인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아세안 FTA 체결의 일환인 한-베트남 FTA 체결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을 받아 양국간 시행토록 추진해야 함

□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노력 필요

-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가장 득을 보는 분야는 바로 서비스 분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서비스분야 베트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건설·유통부문 등 기업체 진출 대상 분야는 물론 관광업,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 투자 대상 부문도 개방이 기대되는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진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베트남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을 적극 이용하여 지분 참여 등을 통한 진출 확대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생계형 자영업 투자가들이 소위 ‘묻지마’식으로 투자하거나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서비스 시장별 개방일정을 잘 점검하고 동 일정에 따라 미리 대비하고 정식으로 투자 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체계적 지원체제 강화

-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기업을 지원할 은행 및 전문 로펌,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의 진출이 미흡한 상황인바, 이러한 기관들의 진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종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봉제, 신발 등 제조업 위주 진출에서 이제는 서비스 분야로의 제 2의 베트남 진출 붐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진출기업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체제 구축

- 베트남에는 현재 1,200 여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승인을 득해 이중 약 600-700 여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나, 이들 기업들이 경영자금 마련 시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금융권 보다는 현지 금융권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우리 진출기업의 베트남 내 사업장과 영업능력 보다는 오히려 한국 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베트남 진출 우리 은행들도 진출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사업성과 및 영업실적 등을 기준, 신용대출을 확대 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의 공격적 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소득세 등 업계 현안사항 정책적 해결 노력

- 베트남은 183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들은 대부분 소득세율이 최고 40%에 이르는데 이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산정 시 외국 주재원들의 주택 임대료 및 자녀 교육비 등을 개인소득에 합산·산정하는 등 소득세 과세 체계가 국제수준과 다르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이 안고 있는 세제상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베트남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 적극 이용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전 국토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는바 향후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산업개발 전략을 인지하여 이들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최대한의 투자인센티브 확보와 지방성의 지원을 얻어내야 할 것임

<베트남의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2006-2010년)>

권역	해당 지역(지방성)	주요 육성 산업	연간 성장을 목표
1 권역	<u>14 northern mountainous midland provinces</u> (Bac Kan, Bac Giang, Cao Bang, Dien Bien, Hoa Binh, Ha Giang, Lai Chau, Lang Son, Lao Cai, Phu Tho, Son La, Thai Nguyen, Tuyen Quang, Yen Bai)	- Hydro-power station - Agricultural-forestry processing: paper, tea, wood, foodstuff, beverages - Exploitation and processing minerals: iron ores, apatite, coal, copper, lead, zinc, tin, wolfram - Chemical, fertilizer - Metallurgy, production of building materials	14.5%~ 15.5%
2 권역	<u>15 Red River delta area and northern central part provinces</u> (Bac Ninh, Ha Noi, Ha Tay, Hai Duong, Hai Phong, Ha Nam, Hung Yen, Nam Dinh, Ninh Binh, Nghe An, Quang Ninh, Thai Binh, Thanh Hoa, Vinh Phuc)	- Mechanical engineering (shipbuilding, machinery, electrical equipment, transportation means) - Thermal-power station - Exploitation and processing minerals - Production of building materials - Textile & garment, footwear	14.5%~ 15.5%
3 권역	<u>10 coastal central part provinces</u> (Binh Dinh, Da Nang, Khanh Hoa, Ninh Thuan, Phu Yen, Quang Binh, Quang Nam, Quang Ngai, Quang Tri, Thua Thien Hue)	- Agricultural-forestry-fishery processing - Oil refinery and petrochemical - Ship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building materials production - Textile & garment, footwear - Electronics and IT	15.5%~ 16.5%

4 권역	4 highland provinces (Daklak, Dak Nong, Gia Lai, Kon Tum)	- Hydro-power station - Agricultural-forestry processing (coffee, rubber, paper powder, sugar) - Mineral exploitation and processing (esp. bauxite)	17.8%~ 18.7%
5 권역	8 eastern southern part provinces (Ba Ria-Vung Tau, Binh Duong, Binh Phuoc, Binh Thuan, Dong Nai, Lam Dong, Hochiminh city, Tay Ninh)	- Oil & gas exploitation - Electricity - Agricultural-forestry-fishery processing - Mechanical engineering - Electronics & software development - Chemicals & pharmaceuticals - Textile & garment, footwear	13.2%~ 14.2%
6 권역	13 Cuu Long delta area provinces (An Giang, Bac Lieu, Ben Tre, Can Tho, Dong Thap, Hau Giang, Kien Giang, Long An, Ca Mau, Soc Trang, Tien Giang, Tra Vinh, Vinh Long)	- Agricultural-forestry-fishery processing for export - Mechanical engineering for agriculture, especially machinery for processing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 - Shipbuilding	14.4%~ 15.4%

<베트남 산업발전 재원 조달 계획>

구 분	2006-20010년 재원조달 비중(%)
ODA	5 - 6
FDI	26 - 27
정부예산	21 - 22
(정부 채권발행 등)	13 - 14
기 타(공기업 및 개인투자)	46 - 47
총 계	100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쟁점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 산업페이퍼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 산업연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작 성 자

- ◆ 김영웅 관장 (하노이 무역관)
- ◆ 윤하청 대리 (해외조사팀)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5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